

# 한국환경회의의 보도자료

☐ 배포일시 : 2021. 9. 9    ☐ 문의 : 간사단체 녹색미래 이정열(02-713-2834)

**한국환경회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 전면금지] 하수도법 개정안 법안상정 및 심의를 촉구합니다.**

- ☐ 한국환경회의 소속단체(46개)는 하수관거, 하천오염 방지를 위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 전면금지]를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개정 상정과 심의를 촉구합니다. 지난 5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 전면금지] 하수도법 개정안’ 법안이 상정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1995년 하수도법에 의해 제조, 판매가 금지되었으나, 2012년 인증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서울경찰청 수사결과에 의하면 주방용 오물분쇄기 10개 제품 50,711대(약 153억 원)가 불법 개·변조, 판매되어 하수구 막힘, 악취분쟁, 민원, 에너지 및 물 과다사용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구매자, 사용자, 설치장소 개인정보 부족으로 일반가정 단속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하수처리장 부영양화로 인한 하천수질까지도 위협에 놓인 실정입니다.
- ☐ 현행법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80% 이상 고형물을 수거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로 처리해야 하지만, 비인증 제품이 비용절감, 편리성 등으로 흡소핑, 온라인 등을 통해 가정이나 식당, 집단급식소 등으로 판매, 구매, 사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비인증 제품인지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자원낭비(물, 에너지 등)와 환경오염(하수 막힘, 하수슬러지 배출 등)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 ☐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사용 절감, 자원 절약 등 각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회의 46개 단체는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하천수 수질오염, 에너지 절약, 처리비용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금지 하수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법안상정으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합니다.**

녹색미래, 자원순환사회연대, 생명의숲,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에너지나눔과평화,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교통운동,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자연의벗연구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동물권행동카라, 서울환경운동연합,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전국귀농운동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자원순환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재단,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사단법인 에코코리아, 부산환경회의,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광주전남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원주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1. 5. .

발 의 자 :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3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의 금지·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환경부는 1995년 하수도 영향을 고려하여 판매·사용을 고시로 금지한 바 있으나, 2012년 인증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함.

그러나 2018년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불법제품이 만연하고 있어 향후 오염부하 증가로 심각한 수질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가 하수도로 배출되는 경우 오염부하가 약 27% 증가하고, 하수처리장 증설 등에 약 12.2조 원의 비용 소요가 예상됨.

또한, 관로 막힘·악취 등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자는 하수의 수질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만 추가적 요금 부담이 없어 공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물 사용량을 증가시켜 정부의 절수정책과 상충되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에도 역행됨.

이에 연구·시험·수출의 특정사용 목적 외에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하천 수질 악화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 33조 등).

## 첨부자료2)

###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관련법률)

- ▶ 「하수도법」 제33조(특정공산품 사용제한 등)제1항 ‘환경부장관은 하수 수질 악화방지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사용함에 하수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 판단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당해 특정공산품 제조·수입·판매, 사용금지나 제한 명할 수 있다.’
- ▶ 「하수도법」 제33조 제2항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정공산품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금지 또는 제한하는 대상과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 「하수도법」 제76조(벌칙)제2호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시행령 제23조(특정공산품 종류) 「하수도법」 제33조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이란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말한다.
-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의무 등)제1항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재활용하는 방식이 아니다.

###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 운영방안)

- ▶ 합법제품(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발행한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서를 획득한 후 KC전기용품 안전 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인증받은 형태로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함(사용범위는 일반가정에 한함) ※식당 등 업소는 사용 불가
- ▶ 분쇄회수방식은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사용.
  - 음식물 찌꺼기 80% 이상은 소비자가 반드시 회수하여야 함(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100% 없이 배출되는 제품은 인증여부와 관계 불법(명령을 위반)제품 임)
  - 2차 처리기(회수부)를 제거하거나 2차 처리기내에 거름망이 없는(100% 배출) 제품은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100% 불법제품임
- ▶ 과태료 및 벌금
  - 하수도법 제76조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주방용오물분쇄기)을 이용한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하수도법 80조제4항7목
  - 하수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주방용오물분쇄기)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한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내 벌금에 처함(하수도법 제76조제2목)